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20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

건축물관리법이란?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생애주기동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집 주소를 검색해 보세요!
https://blcm.go.kr ☎ 070.7016.3388~9

건축물관리점검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법)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마다	▶▶	변경 (건축물관리법)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다중이용업소, 피난약자이용시설, 주택 등은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해야하며, 공사비용 및 보강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합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4천만원/동 이내 국가 : 지자체 : 신청자 = 1:1:1
주택성능보강	공사비 4천만원/호 이내 연 1.2%, 5년거치 10년 상환

건축물 해체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시 계획서 작성, 허가 및 감리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대상	주요구조부 해체 없이 일부를 해체하거나 연면적 500m²미만 · 높이 12m 미만 · 3개층 이하(지상 · 지하 포함)의 건축물이거나 건축신고대상 또는 관리지역 등의 높이 12m미만의 건축물
허가대상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건축물관리 관련 정책 상담·지원, 실태조사, 점검결과 평가 등을 실시합니다.

문의	점검 및 해체공사	☎ 1588.8788
	화재성능보강	☎ 1600.1004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LH 한국토지주택공사